

# 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관리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3월 17일

회 사 명 : (주)크린앤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광 규 범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903-1호 (삼성동, 무역회관)  
(전 화) 02-550-0800  
내부회계관리자 : 이한옥  
(전 화) 02-550-0800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 (1) 내부회계관리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2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 관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회사자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발견,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기록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시의 적절한 작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3.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구축하여야 한다.

### 5.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5.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정보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5.2 회계정보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6. 회계정보의 기록 및 보고

6.1 회계정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6.1.1 모든 거래는 실재로 발생하여야 한다.

6.1.2 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6.1.3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6.1.4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고 적정한 기간에 귀속되어야 한다.

6.1.5 모든 거래는 제5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6.2 회사의 회계정보는 현업부서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기초로 하여 현업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기록되어야 한다.

6.3 현업부서에서 기록된 회계정보는 회계담당부서에서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어야

한다.

6.4 회계담당부서장은 기록된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는 회사가 정한 회계규정에 따른다.

6.5 회계정보를 외부공시 하는 경우 공시담당자는 회계담당부서장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 7.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7.1 회계담당부서는 현업부서에서 기록된 회계정보의 확정시 회계정보가 제 5조 및제 6조 제1항에 따라 기록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발견된 오류는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제 5조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담당부서장은 수정내용을 월별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내부회계관리자는 기록된 회계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시기 및 점검대상은 회사가 정한 회계규정에 따른다.

7.2.1 회계정보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여부

7.2.2 회계정보가 제 6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취하여 기록되었는지 여부

7.2.3 외부공시 된 회계정보가 제 6조 제 5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취하여 공시되었는지 여부

7.2.4 제3항에서 보고 받은 수정내용이 제5조에 따라 적절히 수정처리 되었는지 여부

7.3 제 2항의 점검결과 제5조 및 제 6조를 위반하여 기록된 회계정보는 즉시 제5조에따라 수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회계장부의 관리 및 통제

8.1 회사는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회계장부(전표,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회계정보처리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회계장부" 라 한다)를 상법 제 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8.2 회사는 회계장부의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통제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2.1 모든 회계정보는 회계정보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2.2 회계정보의 확정 및 수정은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2.3 회계장부에의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8.2.4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보안 등의 접근통제와 방화시설, 보험가입, 자료의 백업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9.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9.1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을 포함하여 업무수행상 지켜야 할 관련법령과 사규 등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9.2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중 회계 관리능력이 있는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9.3 제 2항의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담당부서의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에게 이 규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4 감사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시 처리절차

10.1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반행위를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를 요청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모든 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기록·공시를 지시받는 경우 지체 없이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3 내부회계관리자는 제 1항 및 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당해 행위 및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11.1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 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1.1.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11.1.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11.1.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11.1.4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11.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1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12. 제정 및 개정

12.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2.2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13. 위반시 제재사항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임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송병기	감사	내부감사	-	02-550-0800
경영지원실	이한옥	내부회계 관리자	내부회계운영총괄	-	02-550-0800

회계처리부서	이한옥	경영지원실장	회계총괄	-	02-550-0800
전산운영부서	이한옥	경영지원실장	전산운영총괄	-	02-550-0800
자금운영부서	이한옥	경영지원실장	자금 총괄	-	02-550-0800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1	1	-	-	611
경영지원실	1	1	-	-	126
회계처리부서	1	3	-	-	323
전산운영부서	1	2	-	-	174
자금운영부서	1	1	-	-	108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frac{A \text{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text{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이한옥	02-550- 0800	부	16년	27년	9	217
회계담당임원	이한옥	02-550- 0800	부	16년	27년	9	217
회계담당직원	한상기	02-550- 0800	부	12년	17년	15	179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	-----	------	------	-----

2022-02-09	내부회계관리자 이한옥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사업년도 (제42기)의 회계정보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 및 보고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함.	이사회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021년\\_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pdf](#)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2-02-09	감사 송병기	<p>본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p> <p>또한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p> <p>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p>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2021년\\_감사의 평가보고서.pdf](#)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

## 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선일회계법인 )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	------	-------------	------	-----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p>	<p>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크린앤사이언스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크린앤사이언스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p> <p>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p> <p>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p> <p>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p> <p>우리의 검토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
<p>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p>	-	-	-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021년\_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pdf